

---

# 2026년 기업 지원금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목차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금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 워라밸일자리장려금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유연근무제 장려금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지원요건

1.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2.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5.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액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선택근무는 2배 지원: **최대 720만원**

1. 신청기한: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3.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개요

기업의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 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 ③ 지원받은 시스템을 목적에 맞게 활용

# ■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사업주 투자비용의 **80% 범위** 내 지원(1,000만원 한도)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li> </ul> </li> </ul>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li> </ul> </li> </ul>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인센티브(남성)	월 10만원 추가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 지원대상 사업주**

##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피보험자 수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최대 1개월)** 추가 지원
- **사후지급금 폐지**: 제도 사용 기간 내 대체인력지원금 100% 지급
- 대체인력 외국인 요건 완화: **체류자격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지원 가능

#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 ■내용

- 육아휴직 1인당 월 최대 **60만원**(피보험자 수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육아기단축은 월 **20만원**으로 동일

- 업무분담 외국인 요건 완화: **체류자격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지원 가능

#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 1. 신청기한

[육아휴직/육아기단축 지원금]

- 50% 금액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나머지 50% 금액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 종료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 육아지원 제도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2. 지원기간, 주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워라밸+4.5프로젝트

# 소정근로시간단축

■대상: 6개월 이상 주 35~40시간 근속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내용

- 전자기계적인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
-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 ■신청 및 지원

- 단축 개시일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1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사유로 하루 1시간 이상 근무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 당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 ■내용

- 전자기계적인 근태관리
- 연장근로 제한/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 ■신청 및 지원

- 단축 개시일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1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워라벨<sup>+</sup> 4.5프로젝트

■대상: 주4.5일제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20인 이상 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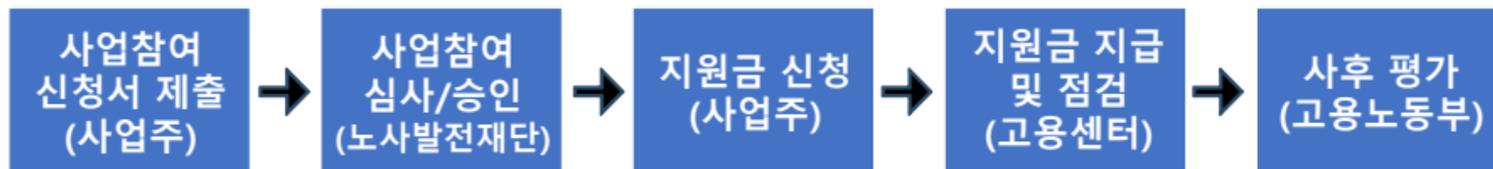
## ■내용

- 노사 합의 /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 시간 단축
- 주 4.5일제 도입 계획 수립 / 출퇴근 관리

## ■신청 및 지원

- 도입수준(전면·부분), 기업규모(50인 이상여부) 별 인당 20만원~60만원까지 차등 지급
- 3개월 단위 신청, 최대 1년 지원

## ■추진체계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고용24)



서류 접수/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7개소)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 ▲충남북부상공회의소(559-5763)
- ▲당진상공회의소(357-2500)
- ▲(주)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522-7980)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전세종충남지회(553-1193)
- ▲(주)한국커리어잡스(556-2829)
- ▲(사)충남산학융합원(357-8720)
- ▲스텝스(주)(02-6280-399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가능: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등

## ■근로조건 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 ■ 고용조정 제한

-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 고용조정 이직 발생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 지원 불가

## ■ 지원금 신청 및 지원

- 지원금 신청 주기: **6개월/3개월/3개월**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년 **720만원**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1년 2개월 내** 3회차 지원금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원

- 지원금 신청 주기: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 6개월당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문의]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3층**

**T: 041-620 -7443~46, 7448,**

**7449, 7498, 9598**

**감 사 합 니 다.**